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연구

2009년 화폐개혁 직전부터~2015까지를 중심으로

곽명일(연합뉴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시작되던 체제전환기 시기를 중심으로 사회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기제인 인민보안원과 일반 주민의 관계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체제전환기를 2009년 화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2015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접촉 형태와 관계 유형 등 두 가지 기준에서 고찰하였으며 접촉 형태는 접촉 이유와 목적, 그리고 접촉 방식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공존과 배신을 반복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보안원의 부패가 심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검열을 단행하였으나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맞대응으로 검열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국가 경제난이 해소되고 인민보안원에 대한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공존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주제어: 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접촉 형태, 관계 유형, 관계 변화, 시장화, 체제 전환기

1. 서론

어느 사회든지 법에 따른 강제와 설득의 적절한 조화 때문에 사회 치안이 유지되고 국가체제가 보존된다. 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복종이 강하게 나타나고 독재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제적 복종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도 역시 그들이 채택한 법이 나라의 질서와 주민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기구인 인민보안부를 통해 실행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¹⁾ 시기를 겪는 과정에 아사자의 속출 등 수많은 악재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곧 이러한 이유로 붕괴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현재 까지도 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와 달리 쉽게 붕괴하지도 않았고, 개혁·개방도 하지 않으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먼저 일당 독재 체제에서 지배층이 결집할 수 있었다는 것과 불만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중 불만 세력의 약화는 국가의 물리적 통제 기구인 인민보안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인민보안원들은 정보원과 방조자를 사회 여러 분야에 대거 침투시켜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한편, 경제생활 환경까지 개입하는 등 계급적 갈등을 조성시켰기 때문이다.

인민보안원들은 주민 내부에 조직화된 반대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1) 원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1938년 12월 초부터 1939년 3월 말까지 100여 일에 걸쳐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혁명군 주력 부대의 험로를 일컫는 말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탁월한 영도로 이 행군이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조국광복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역사적인 계기를 전변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윤현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평양: 평양출판사, 2002), 11쪽.

록 압력을 행사한다. 반항 조짐이 보이면 공개 처형과 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양 설득이라는 유화적 방법을 적용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도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으로 모든 권력이 이양되는 정치적 환경도 변했고, 국가 권력 기관과 무력 기관, 공안 기관도 변화를 보인다. 특히 인민보안부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국가의 중요 권력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김정일 사망 후 처음으로 3대 첩보기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보위사령부) 중 특별히 인민보안대학을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명명했다²⁾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정치범 색출이 기본 사명인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군보위사령부의 기능적 제한성과 비교하면 인민보안부는 막강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체제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제와 감시 속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

인민보안원을 통한 주민의 통제 강화는 북한 사회의 붕괴와 멸망을 방지하고, 지배층의 단결력과 북한체제를 옹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인민보안원을 내세운 전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강제적 통제’만으로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핵심 계층인 당원 또는

2) 『조선중앙방송』, 2012년 10월 6일자는 북한이 체제보안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을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보답하는 학교 관계자, 학생 등의 결의모임이 5일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리병삼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일 ‘김정일인민보안대’ 학장이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광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당의 선군 영도를 받들어 수령보위, 제도보위의 제1부대, 당의 내무군으로 영예로운 사명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3)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 통제 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1쪽.

간부의 신규채용에서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대중적 감시를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인민보안원을 통해 주민 집단을 선별·포섭하였고 불순계층 주민 집단을 선별하고 배제와 억압을 수반하는 등, ‘강제적 복종’과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2013년 12월 인민보안부를 담당했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숙청으로 인민보안부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약해졌다는 견해도 있지만, 인민보안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의 행동 양상을 볼 때, 아직도 인민보안부를 통한 사회 통제 강화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민보안부는 체제유지의 기제 역할을 하면서 잘 작동되고 있지만 여러 형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민보안부의 변화를 설명할 때 조직지휘체계의 변화, 제도의 변화, 그리고 부서별 업무의 변화, 주민 성분규정의 변화, 제복의 변화 등 다양하게 변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인민보안원과 주민과의 관계이다. 특히 인민보안원을 통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사회 통제의 변화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른 인민보안부의 주민 통제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제 전환기 관계의 변화

1) 접촉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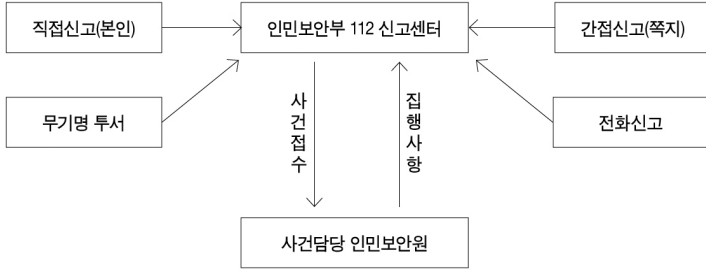
(1) 접촉이유와 목적

① 법제도의 정비

2008년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와병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2009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였으며 2010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천명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업무는 이미 김정일의 활동이 부진한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당·정·군에 대한 통치는 이미 본격화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지만 절대 권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운영할 수 있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들어서면서 열악한 생활환경에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강한 통제 활동이 전개된다. 2013년 5월에는 김정은이 인민보안부를 직접 방문해 최부일 부장 등을 격려하면서 인민보안부에 24시간 경비 체제 구축 등 사회 통제 강화 지침을 내리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내 리설주와 함께 인민보안부 산하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을 관람하는 유희적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평양시에 대규모 마트 설립과 최신형 가전기기⁴⁾의 시장 유입 등으로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환경 속에서 김정은은 각종 범죄에 대해 신속

<그림 1> 주민의 민원에 따른 112신고체계



자료: 인민보안원 출신 탈북민들의 인터뷰 증언.

한 대응을 위한 인민보안부에 112신고센터를 도입하도록 지시한다.

김정은 체제에서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그와 연관된 친인척들과 그를 따르고 숭배하던 고위층 간부들까지 숙청되었고, 전국에 분포된 장성택 연줄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른바 ‘숙청 운동’이 벌어진다. 즉 주민 생활 보장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비교적 윤택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는 엘리트 계층의 정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인민보안부 112센터는 주민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하면 우선 사건 담당 부서나 사건구역 담당보안원에게 사건의 검토·조사·수사사건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임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상급 단위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인민보안부 내에 각종 투서·민원 그리고 범죄 관련 신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 부서가 설립되면서 산하에 112전화신고센터도 만들어졌다.⁵⁾

4) 북한이 ‘액정TV’라는 불리는 ‘LED TV’의 시장 유입을 허용한 결과 북한 전역의 시장에서 최신형 TV가 주민들 속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달라진 시장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법정치 관련 증언 내용

증언 일시	증언 내용
2012. 3.20. (탈북민 A)	김정은이 법정치를 하겠다고 공포하여 단속이 강화됨.
2012. 7.24. (탈북민 B)	김정일 사망 이후 법이 '기존보다 4배' 강화됨.
2012.10.23. (탈북민 C)	김정일 사망 이후 법이 강화되고 단속이 심해졌으며 검열이 증가함.
2013. 3.19. (탈북민 D)	김정은이 법정치를 강조하면서 법에 의한 규율이 강화되었음. 이는 김정은이 법을 강하게 시행하여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주: 법정치 사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자료: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14), 220~221쪽의 <표 III-43>.

112신고센터가 생기면서 인민보안부는 사건을 접수받고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건의 초동 대처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민보안부 활동이 비상적응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5) 인민보안부 감찰부 출신 탈북민 C씨의 증언(2014.2.14).

인민보안부 1국인 종합국은 인민보안부 내의 모든 법적 활동을 지휘하며 주민들의 각종민원, 범죄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시기별 하달되는 당의 방침과 정책을 인민보안부 하부말단까지 침투하고 집행을 보고받아 상부의 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부서로서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부서이다. 또한 인민보안부 종합국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부와 밀접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종합 부서는 당정책 집행담당부와 사건집행 담당부, 호위사업 집행담당부, 112 주민신고센터로 구분되고 있다. 인민보안부 종합국의 지시는 도 보안국 종합처, 시·군 인민보안서 종합과를 거쳐 인민보안소(파출소)에 전달된다. 중앙당과 인민보안부 정치국의 지시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5총국의 호위사업 침투사항 등을 해당 부문에 전달하고 제정된 시일에 집행결과를 보고받아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112신고센터가 도입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신고받고 해당부문에 전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위해 인민보안부 내부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전화교환병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통치 체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군정치’보다는 ‘법정치’를 강조하여 집권 초기부터 인민보안원에 대한 강도 높은 법률화 정책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과 규정 등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제부문 기관장들은 재임 기간 동안 최고인민회의 법제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법정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유희적인 정책도 부분적으로 병행하면서 설득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엿보인다. 예컨대 탈북자 포섭 정책을 제시하거나 중범죄 행위의 자수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 이에 속한다.

물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시한 정책이라 해도, 김정은 정권이 기존 정권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사회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와 함께 강제와 포섭을 배합하면서도 사회 통제는 기존의 4배로 더욱 강화한 것이다. 10대 원칙의 개정과 강조, 포고문의 발표를 통한 공포 조성, 탈북자 단속의 강화, 엘리트 공개 처형의 증가 등은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불순 세력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일부는 포섭하여 대중을 결집하려는 양면적 정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수평 관계 형성을 둘러싼 대립

북한의 인민보안원은 권위주의가 몸에 배어있어 친구나 지인 등 친분이 있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는 인민보안원의 통제 수단인 법에 의한 감시와 처벌, 그리고 통제의 날을 무더지게 하고 인민보안 사업 활동의 균열을 조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민보안원은 법의 일정한 통

제 속에 많은 인맥과 결탁하여 뇌물수수 등의 불법 행위로 살아가고 있지만, 파트너 주민과 지나치게 허물없는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파트너 주민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고 절대복종하는 태도는 인민보안원의 권력기제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우월감을 고려할 때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의 생각은 다르다. 인민보안원을 장기적 파트너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민보안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평적 친분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파트너 인민보안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보안원의 태도가 돌변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배신할 경우 인민보안원을 파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인민보안원은 본인이 벌인 불법 행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발각될 경우 처벌이 엄중할 것임을 깨달을 때이다. 이때 인민보안원은 보안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배신할 경우 자신은 정치적 생명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인민보안원은 파트너 주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인민보안원은 가능한 한 파트너 주민에게 자기의 범법행위를 잘 노출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압수한 얼음(마약)이나 골동품 등 희소성과 가치 있는 상품, 즉 돈이 될 만한 품목을 규정대로 소각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갈취할 목적으로 은닉하여 되팔거나 본인이 복용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 보안원이 압수한 물건이 믿을만한 파트너 주민을 통해 판

매되면 주민은 보안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쥐게 된다. 이때 주민은 보안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인·은닉자·공범자·협력자 등 복합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보안원을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파트너 주민은 공범으로서의 법적 처벌을 고려해야 하지만 인민보안원은 법적 처벌은 물론 출당, 직위해제, 가족과의 이별 등 사회적 배제와 따돌림을 감내해야 한다.

파트너 주민은 인민보안원에게 돈과 뇌물을 적게 제공하면서도 묵묵히 인민보안원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안원의 흠집을 알아내는 데 전념하며 불법행위 정보를 확인한 다음 파트너 보안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접근한다. 흠집 잡힌 인민보안원은 점차 주민과 결탁하여 허물없는 친구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주민은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⁶⁾

주민에게 약점을 잡혀 이리저리 휘둘릴 경우 보안원은 자기 단위에서의 인민보안 사업은 물론 주민 정치 사업과 사회 질서를 위한 치안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오직 파트너 주민과 결탁해 불법과 합법을 수반한 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파트너 주민에게 인민보안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의 영역을 벗어나 서로가 공범자로 수평적 관계가 되어 서로 배신할 수 없는 순치의 관계가 형성된다. 전국적 범위에서 파트너 주민에게 항상 압박을 받으며 절대복종하는 인민보안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민보안 사업은 여러 시행착오와

6) 경제파트너 출신 탈북민 S씨의 증언(2015.2.24).

점차 주민은 파트너 보안원을 상대하면서 친구를 대하듯 반말과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의 요구 사항을 강요하고, 인민보안원은 파트너 주민의 요구를 집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풍과 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체제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③ 인민보안원의 권한을 활용한 동업과 결탁

가. 인민보안원의 권한 여부 타진

북한 주민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급제를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오직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 모든 것이 붕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행위에 전력한다. 시장화가 비교적 안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과 공존관계가 형성된 주민은 안정된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시장에서 상행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장 활동과 연관된 보안원의 권한 활용이다. 북한에서 가정 주부와 노인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직장활동과 인민반 생활에 불참하면서 전업으로 시장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민보안원에 의해 제재되며 노동단련대를 비롯한 행정 처벌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인민반 또는 직장 담당보안원과 시장을 담당할 보안원과의 관계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속의 주체인 인민보안원과의 돈독한 관계는 시장 활동의 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상품을 더 많이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그러자면 인민보안원의 권한과 활동 여부의 검증은 필수이다. 그렇지만 한두 명의 인민보안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해도 시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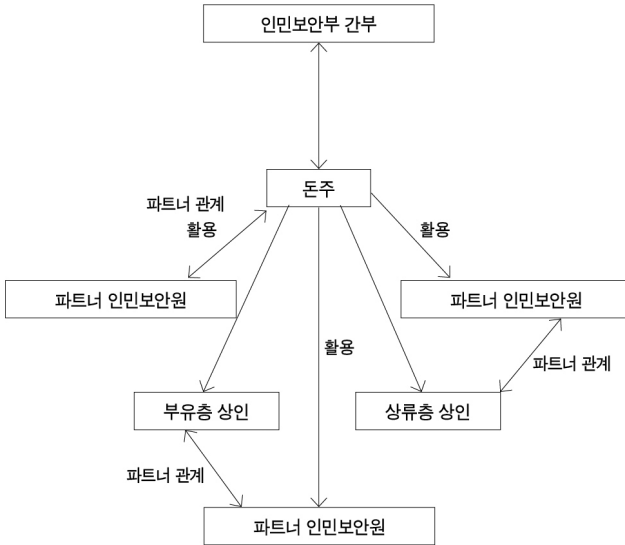
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장은 담당보안원뿐만 아니라 감찰요원들이 수시로 집중 단속하는 곳이므로 많은 보안원을 포섭해야 한다. 그러나 상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단속 보안원 전부를 포섭할 수는 없다. 인민보안원을 다방면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⁷⁾이 있으므로 시장의 부유 계층 상인들은 인민보안원의 활용에 제한성을 가진다.

인민보안원의 활동 여부에 따라 상인의 시장 활동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는 곧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운영규정의 법률 자체가 권력을 가진 인민보안원에 의해 집행되고 조정되기 때문에 ‘돈주’들은 시장 활동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여러 다양한 사업을 크게 전개하려면, 무엇보다 여러 직종에서 종사하는 보안원을 포섭해야 한다. 시장 내부에서는 담당보안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품 유통 과정에서 몰수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인민보안부 감찰부서의 보안원을 알아야 하며 각종 상품 조달을 위해서는 도로 검열 단속 초소 보안원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돈주’들은 상품을 직접 소매하거나, 상업네트워크를 통해 친분 있는 이른바 예측 상인(상층 부류)과 파트너로 연결된 보안원들을 활용하기에 이른다. 시장을 장악한 ‘돈주’들은 인민보안원의 지위와 권한 여부, 활동 범위와 능력에 주목한다. ‘돈주’들은 시장에서 매점을 임대하거나 상품을 도매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중·상층 상인들을 대거 활용하면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보안원들을

7) 인민보안원의 활동 영역과 통제 범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을 관리하는 보안원, 단속통제만 전문으로 하는 보안원, 인민반과 직장 종업원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원, 보행 단속이나 교통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원 등이다.

<그림 2>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 보안원 활용도



자료: 탈북민 인터뷰 증언 내용.

최대한 포섭한다. 상품의 종류와 수량에 필요한 자금을 집단으로 함께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친분이 있는 보안원들 역시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포섭한 보안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

둘째, 주민은 시장외의 영역에서도 인민보안원과의 접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시적 파트너와 단기·장기적 파트너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우선 일시적 파트너 보안원의 활용이다. 직업의 특수성으로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보안원의 활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행증 발급 부서인 인민보안부 2부 보안원의 경우, 인민보안부 2부는 일반 주민들과의 만남이 잦다. 여행증 없이는 전국 각지에서 상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2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며 여행증 발급을 위해 돈과 뇌물을 아끼지 않는다. 부패가 심한 부서로 낙인 되어 인민보안부 중앙지도부는 2부 보안원에 대한 인사 이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인민보안부 2부 보안원은 대부분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기보다는 2~3년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재직하는 기간에 과오 없이 최대한 뇌물을 챙기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을 여러 번 활용할 수 없다. 짧지만 안전한 직위 유지를 위해 2부 보안원은 주민들과의 접촉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연계를 가졌던 주민과는 다시 거래하지 않는다. 주민들 역시 일회성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다. 설사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뇌물만 수수한 2부 보안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민은 2부 보안원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외에 검찰부서의 책임자나 보안소(파출소) 소장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부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서 각종 불법 의료행위나 차떼기 장사를 벌이는 등 일시적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돈주’들도 존재한다.

다음은 단기·장기파트너의 활용이다. 단기 파트너에는 인민보안부 검찰 부서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나 시장 담당보안원이 속하며 장기 파트너는 주민의 거주 지역·직장 담당보안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 부서에서 근무하는 보안원들은 3~4년 근무를 마치면 인민보안 사업과 업무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가질 수 있게 하부 말단 단위 담당보안원이나 다른 부서로 보직 순환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주민들은 이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검찰부서요원들을 근무하는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활용한다. 이 시기 검찰부서에 종사하는 보안원은 ‘힘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때 한몫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주민은 보안원의 모험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그러나 인민보안부 하부말단에서 근무하는 담당보안원은 한번 부임되면 승진도 어렵고, 대부분 한 직종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민과의 유착이 깊고 또 주민들은 담당보안원과의 장기적(영원한) 파트너로 오래 활용할 수 있다. 보안원 자신도 뇌물은 조금 챙겨도 입소문이 나지 않게 오래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주민도 역시 장기파트너로 친분을 유지하기 원한다. 인민반 생활의 불참과 시장 참여를 위한 시간별기는 담당보안원과 얼마만큼 친분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이익 증대를 위한 공존관계 지향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은 비교적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들이 국가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주민 통제 사업을 뒷전에 두고 시장에 사활을 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인민보안원을 통한 공권력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시장 상품의 값은 급등했고, 통제가 저조할수록 물품 값은 급감한다. 즉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상인과 권력층의 쌍방손실은 불가피했다. ‘단속할 것인가? 상인과 공생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은 인민보안원의 이익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운영원리를 터득한 보안원들은 상인과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았고, 국가 정책을 무기로 한 폭력적인 감독 통제보다는 느슨한 언사로 상인과의 접촉을 시도한다. 즉, 상인과 보

안원 서로의 이익을 챙길 기회가 마련된다. 보안원들은 골목 시장에서 통제 물품 집중 단속 기간이 하달되면 상인들에게 낱짜와 시간을 제공해, 매대 상인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뇌물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인은 단속 정보를 알기 위해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보안원은 단속 정보로 화답한다.

기존에는 단속하고 단속받는 관계, 쫓고 쫓기는 관계였다면 이 시기 이익추구를 위한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처음 관계가 성립될 때에는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민보안원에게 단속된 주민은 뇌물을 주고 풀려나오는데 이 과정에 단속한 보안원과 안면을 트면서 친분을 쌓을 기회를 마련한다. 즉 사회주의 법률 속에서 인민보안원은 소극적으로나마 통제하지만 대부분 비(非)사회주의적 상행위 단속 과정에 상인들과 결탁하게 되며 공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뇌물형 결탁 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 정책은 무력화 단계로 접어든다.⁸⁾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미봉책 등으로 인민보안원은 권력과 공존이 적절하게 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 축재를 이룬다.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형 부패가 만연해지면서 권력을 장악하면 할수록 인민보안원들은 부의 축재에 매진한다. 특히 비(非)사회주의 검열로 파견된 요원들 역시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다.

국가 배급 제도의 마비와 보안원의 복지가 붕괴된 기회를 이용하

8)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상거래 기술을 터득한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호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피동적 주체가 아니며, 지배 권력층 또한 주민들을 장마당에서 끌어내어 국가 영역 내로 ‘동원’하기 위한 대책과 수단도 거의 없었다. 권력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을 장마당에서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국가의 책략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단적 행위 주체로서 주민들이 성장할 잠재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는 잘 알고 있다.

여 상인은 보안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접근을 시도하고, 점차 보안원의 사생활까지도 파악한다. 점차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단속 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위자인 보안원의 삶의 질도 많이 개선된다. 뇌물 비리 행위가 전 사회적인 기류로 자리 잡으면서, 당 기관과 인민 보안부 그리고 사회 행정 기관들 사이에서도 돈독한 권력형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정권 기관 요원들은 서로가 유착되어 주민을 대상으로 서로의 편의를 보장받으면서 이익 실현을 위한 사적 활동을 넓혀 나갔으며,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상인을 포섭했다.

다. 월권 남용을 위한 접촉

북한 인민보안부는 주민통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겸하고 있어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인민보안원은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공존에 필요하다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인민보안원의 월권 남용을 통한 결탁 관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법의 정책 규정보다 먼저 돈과 뇌물을 우선시하면서 파트너 주민의 청탁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은 여행증 발급과 주거지 이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⁹⁾고 명시하였다. 주거이전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5조(1999).

이전할 자유 및 일단 정한 주소·거소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¹⁰⁾ 이전에 주민들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등을 인민보안부로부터 엄격히 제한을 당해왔다. 주민은 인민보안부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할 수 있다.

북한은 평양시를 수도 및 특별 지역으로 타지방과 분리를 시켜 놓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한 주민에게는 시민증을 발급해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평양 시내에서 성분이 안 좋은 시민들은 지방으로 이주시키거나 주거지를 벗어난 여행과 운행을 차단해왔다. 직장과 조직, 국가 기관과 감시 기관이 유기체처럼 얽혀 있는 북한에서 사적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인민보안원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이동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주거지를 옮길 시 규정을 보면 먼저 주거 이동을 위한 사유서가 있어야 하며 이동할 지역의 인민보안서와 해당 담당보안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인의 출신 성분 조사는 필수이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문건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취소된다. 주거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기관의 동의서와 인민보안부의 승인여부이다. 증빙서류로서는 조직 이동증¹¹⁾과 군사 이동증,¹²⁾ 식량 정지 증명서,¹³⁾ 본인 소속의 조직에서 발급하는 개인 평정서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인민보안서에 제출하면 주거지를 이동할

10) 김철수, 『법학개설』(서울: 박영사, 2004), 390~391쪽.

11) 당원·직맹원·농근맹원·청년동맹원 등이 소속된 조직에서 발급하는 이동증을 말한다.

12) 군사 이동증은 교도대(예비군), 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이동증을 말한다.

13) 식량배급을 위해 직장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이다.

지역의 인민보안 기관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거주 이전이 승인되는 데, 퇴거 증명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민보안서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집중 감시와 추적을 받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평양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과 지방, 농촌과 농촌 사이의 주거 이동은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정상 주민의 주거 이동은 인민보안부 신분 등록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해당 보안소(파출소) 담당보안원이나 감찰부서 요원들은 파트너 주민의 주거이동을 위해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원래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농촌을 벗어나 시내로 주거를 옮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민보안원만 잘 섬기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 담당보안원이 승진하여 도시로 옮길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파트너 주민의 주거지 이동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또는 정보 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정보원을 계속 활용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정보원을 자기가 관할하는 주민 지역에 주거지를 옮기도록 도와주는 일도 자처한다. 물론 평양특별시나 나선지구, 그리고 직할시로의 이동은 아직도 엄격한 규정이 있어 인민보안원의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인민보안원의 월권행위를 통한 주민과의 결탁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상행위를 위한 불법 여행증 발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도와 도를 넘어 여행하거나 전국 각지 명승지 관광이나 사적 용무로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일반 주민들이 여행 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할 여행증명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즉

평양시 출입여행증, 군사 분계 연선 여행증, 국경 연선 여행증, 일반 여행증, 해외여권이 있는데 국내 여행증은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부 2부에서, 해외 여행증(해외여권)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승인·발급한다.¹⁴⁾

여행증명서는 해당 시·군 인민보안부 2부(여행증명서 발급과)에서 발급하는데 인민보안부 2부는 주민의 출입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지역 인민위원회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여행증명서는 주민의 출신 성분과 정치 동향,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진분자¹⁵⁾들만 발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평양시에는 국가적으로 승인된 견학이나 참관 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국가의 승인 아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나라에서 제한한 구역에는 반드시 승인번호를 받아 여행하게 되어 있음)하게 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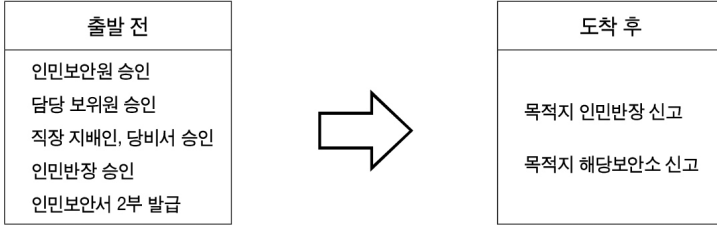
여행증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인민보안 기관에 비치된 여행증명서 신청 서류를 받아서 현직 기업소 책임자 승인 도장과 해당 인민반장 도장, 그리고 담당보안원, 담당 보위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한사람이라도 승인 서명을 거부할 경우 여행증의 발급은 취소된다. 여행 시 행방불명되는 자가 생길 경우, 서명을 허락한 간부들이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가급적 출신 성분이 좋은 대상에게 발급해준다. 여행증이 없이 여행할 경우 집결소나 노동단련대에 수용

14) 국가 보위원 출신 탈북민 G씨의 증언(2014.12.4).

해외여권은 북한정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에 친인척을 둔 북한주민이 방문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인데 평소에는 소지할 수 없으며 일회성 여권에 불가하다. 북한의 일반주민은 해외여권을 만들 수 없다.

15) 선진분자는 출신성분이 핵심계층 이상의 주민을 의미한다.

<그림 3> 여행 시 신고 절차



자료: 이우영, “북한 사회통제체도의 특성과 변화,” 김계동 외, 『북한의 체제와 정책: 김정은시대의 변화와 지속』(서울: 명인문화사, 2015), 293쪽.

되어 강제 노동을 비롯한 가중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행증은 누구나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층에 따른 여행증 발급 제도를 무시하고 주민과 공존 관계를 형성한 보안원들은 파트너 주민을 위해 여행증을 무작위로 발급해주거나 제한 구역을 두지 않고 있다. 평양이나 함북도 무산, 회령, 온성, 그리고 양강도 혜산 일대의 국경 지역과 황해도와 개성과 같은 최전방 일대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승인번호 여행증)는 불법으로 제작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행증명서는 위쪽에 증명서 번호가 기재되는데 이 번호는 인민보안부에서 3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생일을 더한 숫자가 기재되든, 아니면 생일을 빼서 계산한 수자의 증명서 번호가 기재되든, 이는 ‘2부’에서 근무하는 요원과 열차나 초소 단속 보안원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안원들은 인민보안부 2부 보안원과 결탁하여 계산법까지 알아낸 다음 여행증명서 용지를 대량으로 빼내어 불법으로 번호를 기재하고 돈과 뇌물을 받고 파트너 주민에게 넘겨주어 상행위

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보안원에게 넘겨받은 여행증명서는 주민을 통해 대체로 암시장에서 일반상인에게 암거래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되거래 상인에게 도매되기도 한다. 인민보안원의 월권 남용을 통한 결탁에서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부 보안원들이 출장 구간을 선정한 다음 상인과 동행하여 돈을 받으면서 전국을 마음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범인 호송차에 상인을 범죄자로 위장시켜 각종 초소를 통과하게 하며 업무용 승용차에 장사에 필요한 물품을 실어나르기도 한다. 즉, 보안원의 유동 경위에 따라 상인의 유동도 같이 진행되는 것이다.¹⁶⁾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집단과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 물질, 돈을 우선시하는 인민보안원의 이러한 월권 남용행위는 인민보안원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접촉 방식과 공간

① 이익의 증대를 위한 상호의 접촉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공식적인 접촉은 사회치안 유지 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합법적인 접촉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불법적인 공존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접촉은 이질화되고 있다. 2009년 화폐 개혁

16) 담당보안원 출신 탈북민 E씨의 증언(2015.8.5).

이 경우는 협동농장 농민을 제외하고, 군 소재지에 살고 있는 노동자를 도 소재지에 거주시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농민의 유동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농업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촌지역의 농민으로 가는 것, 즉 지역은 바뀔 수 있지만 농민계급의 노동계급으로 변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후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시장은 비교적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접촉 형태 또한 물질적 부 획득을 위한 이익 추구의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먼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인민보안원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공적 업무를 통한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이 점점 저조해지고, 사적 요구 실현을 위한 제공장소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등 접촉 장소의 활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대부분 인민보안원은 주민을 만나려고 할 경우, 공적 업무와 연관된 내용이라면 인민보안부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원하지만, 사적 요구 실현을 위한 만남인 경우 대체로 주민 가옥이나 기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한다. 서로의 접촉 과정에서 먼저 사적 요구를 제시하지 않던 지난날과 달리, 인민보안원들은 주민과의 접촉 시 대부분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주로 인민보안원은 주민과 접촉하여 인민보안부에 필요한 세 부담과 사회적 과제, 그리고 출장용 차 연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민보안부 내부에 필요한 건설 자재·난방용 석탄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또는 물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친분관계가 성립되기도 한다.

점차 주민과의 파트너십이 형성된 인민보안원은 본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가로 인민보안부의 시장 단속 시간과 주민 가옥에 대한 사찰 등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인민보안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다. 인민보안원의 청탁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주민의 선택에 달렸지만 인민보안원 역시 주민의 재력에 걸맞은 일정한 정도의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청탁을 위한 주민의 만남이 있다. 주민이 인민보안원을 만날 의지를 표명할 경우 대부분 인민보안원의 집 전화를 사용한다.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의 접촉은 주변인들에게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인민보안원에게 청탁할 내용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증 발급과 상행위에 필요한 운수 수단 활용 내지는 운반, 그리고 단속 정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익 실현을 위한 주민의 만남은 인민보안원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과 가치가 비교적 맞아떨어져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접촉 과정에서 주민의 청탁 요구에 충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민은 보안원을 자기 요구 조건에 만족하는 파트너라고 인식할 경우 인민보안원의 ‘관혼상제’에 필요한 자금이나 상품을 더 배려해주는 사례도 있다.

인민보안원 역시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요구사항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만이 잦은 접촉을 갖고 유대를 강화해나간다. 그렇다고 주민의 요구 사항이 100%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주민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끈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경우에는 배신 관계라는 극단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문화를 막고 비(非)사회주의 현상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인민보안원과 주민에게 불안한 환경이 조성된다. 부패를 막기 위한 당·검찰·인민보안원으로 구성된 국가의 합동검열단이 출범하였고,¹⁷⁾ 주민통

17) 인민보안부 예심원 출신 탈북민 K씨의 증언(2015.11.3).

합동검열단은 2012년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초기의 사명은

제와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인민보안원과의 더더욱 단합을 강화했다. 인민보안원은 검열에 제기되면 파트너 주민의 재력을 활용해 위기를 탈출했다. 따라서 이 시기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공생 관계형성으로 인한 접촉은 인민보안원과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뇌물 제공장소의 활용

북한에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접촉을 위한 여러 형태의 장소가 존재한다. 접촉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장소의 접촉과 비밀장소의 접촉, 그리고 제공장소의 접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공장소는 인민보안원이 주민과의 합법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인민반, 사회 모든 건설 현장이나 농촌, 어장, 사무실 등이 속한다. 비밀장소는 인민보안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법적이지만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말하는데, 수림속 또는 아파트 옥상 등 인민보안원이 지정하는 임의의 장소이며 범인 검거를 위한 매복, 감시, 도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곳도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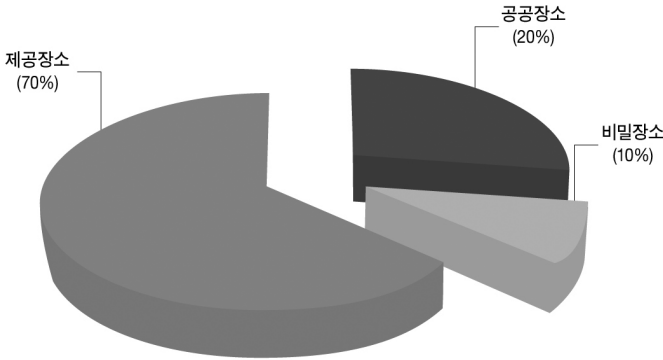
제공장소는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불법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주로 인민보안원에게 주민이 청탁이나 뇌물 제공, 비리 관련 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곳이다. 주로 인민보안원의 집이나 청탁 주민의 집, 인민보안원이 지정한 임의의 장소가 속하며, 이러한 곳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무사히 물품을 전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북한 내에서 정권의 안정을 위한 사상과 통제는 강화되고

북한주민의 일탈과 탈북을 막기 위한 검열이었으나 점차 시장상인 단속과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간부들에 대한 검열도 함께 진행하였다.

있지만 일반 주민에게 있어서 시장 활동의 보호를 위한 인민보안원과
의 돈독한 관계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주민들에게 ‘많이 벌
어 남보다 더 잘살아 보자’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통제의 주체인
인민보안원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인맥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인민보안원과의 유대
관계 확대를 원하고, 보안원은 돈과 뇌물을 원하게 되면서 두 계층
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분위기는 전반적인 사회 기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민보안원과의 유대를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하
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촉 공간이다. 접촉은 부자연스러운 불법
적인 만남이므로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서도 뇌물과 청탁,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
이다. 청탁을 통한 뇌물 비리 행위가 발각될 경우 쌍방은 모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로가
더욱 안전한 장소를 추구한다. 대체로 물품을 주고받는 장소로 꼽히
는 곳은 인민보안원의 집이나 파트너 주민의 집이다. 그러나 파트너
주민의 집이 위치한 곳이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인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일 경우, 인민반장이나 다른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대부분 인민보안원의 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집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민보안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소지하고
나갈 수 없고, 주민이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기
기 때문에 보통 인민보안원의 집에서의 접촉을 더 원한다. 접촉 시간
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낮보다 늦은 밤에 이루어진다. 인민보
안원들이 사회 치안을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주민을 자주 접촉하는
것은 사업 성과로 반영되는 합법 활동이지만 ‘나의 고객’, ‘내가 뒤를

<그림 4> 체제전환기 장소의 활용도



자료: 탈북민 인터뷰 증언내용.

봐주는 대상’, ‘영원한 후원자’로서의 파트너와의 접촉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훗날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화폐 개혁 이후 체제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상행위를 진행한 탈북민 대부분이 담당보안원이나 시장 주재 보안원의 집에 그들이 요구한 너물을 들고 갔다고 증언하였다.¹⁸⁾

조사결과가 반영하듯이 보안원의 업무로 인한 주민과의 공식 접촉보다는 사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적 만남이 자주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독신 인민보안원들

18) 시장 상인 출신 탈북민 O씨의 증언(2015.6.24).

“어느 날 담당보안원이 부탁한 담배와 술,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밤 9시가 넘어서 보안원의 집에 찾아갔는데 다른 손님이 먼저 와 있었다. 보안원은 나를 보고 난색을 보였고, 눈짓으로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10분이 지나서 보안원의 부인이 나와 ‘오늘 예견되지 못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에게 말을 하고 내 물건을 들고 들어갔다. 담당보안원이 다음날 나를 만나 다음에 올 때는 주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라고 하여 다음부터는 아들을 내 대신 보내어 물건을 전달했다.”

에게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단골 식당의 골방에서 뇌물이 오갔다고 한다. 이 시기 정치 활동이나 인민반 선전 사업과 관련된 공식 장소에서의 주민 접촉은 범인 색출이나 정보원의 접촉을 위한 비밀장소의 접촉보다 우세했지만, 뇌물제공과 청탁으로 이어진 제공장소의 활용보다는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에 공생 관계가 형성되면서 국가의 공적 업무로 인한 접촉보다는 사적 요구 충족을 위한 제공장소에서 잦은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의 시장 활동은 인민보안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의 유형

(1) 신흥 부유층과의 결탁

북한에서 새로 등장한 신흥부유층에는 기존의 시장 활동에서 가전 제품 등 큰손 되거래, 외환 거래, 자동차 부품, 의류를 전문으로 한 도매상들이 속한다. 이익의 확대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훗날 ‘돈주’로 등장하여 대부분 외화벌이 기지를 설립하고 수장으로 활동한다. 외화벌이 기지의 사명은 당 자금 명목의 수익활동이며 외화벌이 주요 기능은 수출업을 통해 당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벌이 원천은 금·은·아연·망간·니켈·희토류·몰리브덴 등 희귀금속 채광, 수산 자원의 양식 채취, 송이버섯 등 산나물 채취를 통해 확보된다. 외화벌이 기관들은 확보된 수출원천을 해외에 직·간접적으로, 합·불법으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그러나 막대한 사유 재산의 축적을 불허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서 외화벌이 활동은 합법이지만 밀매·밀수 등의 행위와 공금횡령 등 개인재산 소

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외화벌이라고 하면 어쨌든 ‘돈을 만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항시적인 법기관의 감시와 검열 통제가 불가피하다. 외화벌이 주장들이 검열 요원과 내통하지 않는 한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

외화벌이 기관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수출원천을 자체의 생산기지를 통해 확보하지 않고 돈과 상품으로 구매·교환하여 확보하거나 종업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확보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외화벌이 기관은 법적인 단속·처벌을 받게 된다.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법기관의 검열 사항은 우선 국가가 제시한 수출계획 미달, 또한 현금·현물 등 수출량 허위보고, 도·소매 가격조절을 통한 횡령 등이다. 법기관의 검열을 피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인민보안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검열이 길어질수록 외화벌이 ‘돈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시기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검열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신흥부유층, 즉 ‘돈주’들은 인민보안원과의 친분을 희망한다. 본 연구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민보안원과 외화벌이 ‘돈주’의 관계는 시장화시기에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전환기에는 공존 관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화벌이 사장들은 검열요원으로 외부에서 온 인민보안원과는 친분이 없으므로 파트너 인민보안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부탁내용에는 검열기간 회사의 부족한 공금에 대한 일시적인 대여, 각종 불법행위 발각 막아주기 등이다. 만일 검열결과가 엄중하여 외화벌이 ‘돈주’에 대한 숙청이 이어질 경우 인민보안원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가급적 검열을 피하도록 많은 협조를 한다. ‘돈주’의 청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한 인민보안원은 직업상 동질성을 내세워 검열에 참여한 인민보안원을 포섭하거나 검열과정에서 누락된 부족한 자

금 보충을 위해 은행·담당 기관·기업소 또는 타 상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검열요원들에게 음주접대와 사례비를 제공하는 일도 자처한다. 인민보안원에게 있어 달려나 유로와 같은 큼직큼직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외화별이 기관밖에 없으므로 외화별이 기관 파트너 ‘돈주’를 돕는 일이면 보안원은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선다. 인민보안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는 훗날 ‘돈주’를 통해 거액의 돈과 뇌물로 행해지고 ‘생명의 은인’이라는 은어를 써가며 확고한 친분 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친분 관계가 지속되면서 인민보안원은 이외에도 ‘돈주’를 위해 집중 검열 기간이나 노상 검열 구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대책을 세워주며 중앙 집중 검열로 법의 처벌이 불가피한 대상에게는 검열이 끝날 때까지 타 지역에 피신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외화별이 ‘돈주’에게 있어 인민보안원을 포섭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검열총화에서 처벌을 받아 쫓겨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민보안원 역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화별이 ‘돈주’와의 유대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승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한다.

(2) 권력과 사적 용무의 결합

체제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들은 공적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재력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가 만연해졌다.

우선 인민보안원이 개인 가옥에 대한 침입·도난행위를 막기 위한 범죄예방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 대부분 일반주민은 시장에 나갈 시간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집 경비를 맡기기도 하지만

침입·도난·강도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시에는 인민반 신고 체계를 통해 인민보안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한다. 하지만 중대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 도난 사건에 대한 인민보안원의 범죄수사는 비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민보안원과 공생 관계가 형성된 상류층 주민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내세워 집 경비를 서는 것이 아니라 인민보안원에게 청탁하여 자기 집주변에 대한 순찰을 주기적으로 직접 진행하도록 강요한다. 주민과 결탁한 인민보안원은 본인이 직접 주민의 가옥에 대한 절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에는 정보원이나 ‘노동자 규찰대’를 비롯한 보충 인력을 배치하기도 한다.

또한 주민은 파트너 인민보안원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민보안원과 파트너 관계인 상류층의 주민인 경우 인민보안원에게 소속된 ‘노동자 규찰대’¹⁹⁾에게 상품 운반을 맡기거나 집안일을 돕도록 강요하면서 마음대로 부리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 주민들 속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봐준다.”는 인민보안원에 대한 의견이 속출하였고, 보안원의 차별적 순찰 활동에 대해 불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해지면서 인민보안 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기도 했다.

19) 경비인력의 부족으로 인민보안부는 공장·기업소의 특수부대출신을 채용해 ‘노동자 규찰대’를 만들어 인민보안원의 지시에 의해 각종 단속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인민보안부에 영입된 단속 요원이지만 노동자로서 일정한 기간만 인민보안부의 지시에 따르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자기단위에 복귀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 안에서의 차별성 논란이다. 북한의 시장은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되거래 상인, 이외에 날치기(소매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시장에서 상행위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경제적 계층 분화, 신분 관계와 재력의 기반에 따라 극빈층(최하위 계층)과 중간층, 상류층, 부유층(‘돈주’)으로 구분한다. 북한 전역에서 지역적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 식량의 여유가 거의 없는 가구를 극빈층으로 분류하며 최소한 며칠분 이상의 예비 식량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상품을 받아 되거래하거나 금전적 여유가 비교적 갖추어 있는 가구를 중간층,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식량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상류층, 막대한 자산을 갖고 예측 상인을 두고 있는 상인을 부유층(외화벌이 ‘돈주’ 포함)으로 구분한다.

노상에서 기초 생활용품과 음식을 팔고 있는 극빈층 상인과 식료품이나 곡물, 수산물을 되거래하는 상인²⁰⁾ 같은 중산층 상인은 인민보안원의 보호라인에 선택될 수 없으며 그들의 상행위는 언제나 단속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공업품과 의류품, 가전제품을 파는 상층상인과 외화벌이 ‘돈주’인 부유층 상인은 언제나 인민보안원의 관심 속에서 상행위를 진행한다. 인민보안원의 보호를 받으며 시장에서 모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주’ 계층의 상인은 모든 상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낙인 되어 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민보안원들은 상인들의 시장내부에서의 구역·위치를 지정해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안면이 있는 부유층 상인인 경우 시장 출입구와

20) ‘되거래 상인’은 다른 상인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또 다른 상인에게 웃돈을 받고 팔아 이득을 챙기는 상인을 말한다.

같은 호객행위가 용이한 자리를 선정해주거나 소매치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감시가 잘되는 곳에 지정해주기도 한다. 시장에서의 날치기 행위자 대부분은 떠돌아다니는 고아, 즉 ‘꽃제비’²¹⁾들이기 때문에 인민보안원에게 적발될 경우 노동 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민보안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보다 극빈층·중간층 등 인민보안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힌다.

다음으로 인민보안원들은 공적 업무시간을 파트너 상인의 사적 용무에 투자하기도 한다. 도매상인들의 상품 보관창고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통행증과 각종 증명서 발급도 도맡아 한다. 수배자 체포 또는 간부 신원 조회 등의 출장을 구실로 상품 운반에도 동참한다. 이처럼 인민보안원의 공권력이 사적 욕구 실현에 남용되면서 인민보안원의 일상은 공적업무와 사적용무가 혼재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3) 갈등의 편재성에 따른 배신 관계

북한에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존 관계에서 배신 관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배신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원인은 무엇보다 접촉과정을 통한 공생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요구나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1) 북한에서 ‘꽃제비’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부모가 없거나 집이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러시아어의 부랑자, 방랑자들을 ‘꼬제트’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점차 ‘꽃제트’로 불리다가 ‘꽃제비’로 와전된 용어이다.

우선 인민보안원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지가 하락한다고 인정될 때 정보원을 제명하며 본인의 불법 행위가 노출되어 파국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파트너주민을 불신한다.

첫째, 정보원 제명을 위한 인민보안원의 행위이다.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 사업을 위해 필수인 정보원(안전소조원)을 합법적 방법으로 영입하고 활용한다. 활용 중 정보원이 제명되는 요인은 인민보안원의 지시에 불합리한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거나 정보활동의 비밀을 발설하여 정보원의 신분을 노출할 때, 그리고 인민보안원의 지위와 주민 감시 사업에 위협을 미칠 경우, 바로 제명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정보원이 스스로 제 역할을 찾아 하지 못할 경우, 출신 성분이 하락할 경우,²²⁾ 공적임무보다 사적 일을 중시할 경우, 정보원 역할을 초월하여 “인민보안원 행세”를 하는 월권행위가 나타나면 제명하기에 이른다.

둘째, 경제 파트너에 대한 불신이다. 인민보안원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파트너와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불법행위 봐주기’와 ‘뇌물’이 공존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보안원은 경제 파트너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 때문에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는 엄연한 불법이다. 경제 파트너가 인민보안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남에게 과시하거나 범죄행위에 자주 가담하여 인민보안원의 업무에 걸림돌로 작

22) 북한의 주민들은 출신 성분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핵심계층의 출신 성분을 가진 자나 그의 친인척(6촌까지 해당됨) 가운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경우,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 등 계층하락으로 이어진다.

용할 경우, 그리고 인민보안원 본인의 승진과 생계 영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즉 경제 파트너가 상품유통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여 더는 인민보안원의 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재력이 약해질 경우가 있고, 범죄 사건에 계속 연루되어 보안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인민보안원은 냉정하게 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원과 경제 파트너 주민이 먼저 인민보안원을 배신하는 경우이다.

첫째, 정보원의 배신이다. 정보원의 정보활동으로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투자할 경우 가족의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정보활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인민보안원에게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점차 정보활동을 접으려는 의지를 보인다. 정보활동을 지속할 것인가, 생계유지에 집중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경우 대부분 정보원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불가피하게 정보원 활동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보안원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활동종료의 의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정보원은 정보활동의 무(無) 실적으로 인민보안원이 직접 제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경제 파트너 주민의 배신이다. 인민보안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대가성 지출이 훨씬 많을 경우, 경제 파트너 주민은 점차 보안원과의 접촉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배신의 길을 선택한다.²³⁾ 즉 정보와 뇌물이라는 등가 교환의 선을 넘어 지나친 물적 욕구를 추구하는 인민보안원과는 공존 관계 형성을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23) 경제 파트너 출신 탈북민 S씨의 증언(2015.2.24).

관계를 깔끔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에서 배신의 주체는 그 요인에 따라 인민보안원이 될 수도 있고 정보원이나 경제파트너 등 주민이 될 수도 있다. 즉 인민보안원과 주민사이의 파트너십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교차하게 되며 그로 인해 공존·배신 등 역학적인 변동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사회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기제인 인민보안원과 일반 주민의 관계 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인민보안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미시적·구조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를 체제 전환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 접촉 방식에서는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공존 관계가 지속하면서 수평 관계를 지향하는 주민이 늘어났고, 공생 관계가 확산되면서 배신 관계로 변화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한다. 인민보안원에 대한 권한 활용 여부를 먼저 파악하려는 주민의 접촉 목적과 주민과 결탁하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려는 인민보안원의 목적이 서로 상부상조를 이룬다. 주민은 인민보안원을 장기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인민보안원과 수평적 친분 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인민보안원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주민과 수직적 친분관계를 원한다. 이러한 관계를 둘러싼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대립은 배신 관계로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평 관계는 시장에서의 상행위 활동에 대한 보호와 적은 뇌물로 많은 혜택을 보려는 주민이 원하는

접촉 방식이다.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안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수평 관계 성립에 부정적인 보안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약점을 쥐고 있어야 한다. 공생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도권 다툼이 항시적으로 발생하며 갈등의 편제성에 따른 배신 관계도 발생한다.

다음으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접촉 장소로는 뇌물이 오가며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제공장소의 공간 활용이 제일 많았다는 분석이다. 제공장소의 활용이 다른 장소의 활용보다 많았다고 볼 때 인민보안원과 주민은 사적용무를 실현하기 위한 청탁이나 뇌물제공과 같은 접촉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가 공생·배신 등 복합적인 관계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형성케 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동력으로 결집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 위기라는 변화가 인민보안부의 변화를 불러왔고,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20일 / 채택: 4월 6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상선 외, 『주민등록사업참고서』(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3).
- 김일성, “조국과 인민에게 충직한 내무 일군이 되어야 한다. 내무성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식에서 한 축사(1948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일군들이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을 관철하자,”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 노선: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월 3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김정일 선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윤명현, 『우리식 사회주의 100문100답』(평양: 평양출판사, 2004).
- 윤현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평양: 평양출판사, 2002).
- 홍승운, 『자립경제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2) 논문

- 김정옥, “동, 인민반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연구,” 『정치법률연구』, 제4호(2008).
- 김철웅,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절실한 요구,” 『근로자』, 제9호(2004).
- 리만석,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 『정치법률연구』, 제4호(2004).

3) 기타 자료

『북한형법』.

『북한형사소송법』.

『인민보안단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철수, 『법학개설』(서울: 박영사, 2004).

이교덕·임순희·조정아·송정호,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2).

이규창, 『인민보안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 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 통제 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_____,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특성과 변화,” 김계동 외, 『북한의 체제와 정책: 김정은시대의 변화와 지속』(서울: 명인문화사, 2015).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6).

2) 논문

길화식, “북한 공안기관의 사회 통제 기능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동성, “북한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북한통제 유형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신현기,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2호(2002).

안희창, “김정일시대 북한의 사회 통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 2호(2005).

4) 기타 자료

북한연구소, 『北韓』.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북한·제9차 개정 헌법』. 2009.

_____, 『주간 북한동향』 각 호.

3. 국외 자료

1) 단행본

Fredrich, Carl Jockhim and Brezinski, K. Zbigniew,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Eyal, Gil·Szelényi, Ivàn·Townshley, Eleanor, *Making Capitalism without Capitalists: Class Formation and Elite Struggles in Post-Communist Central Europe*(London: Verso, 1998).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鐸木昌之, 『北朝鮮 首領制の形成と変容: 金日成, 金正日から金正恩へ』(東京: 株式會社明石書店, 2014).

_____,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2).

萩原遼, 『金正日隱戦争』(東京: 文藝春秋, 2006).

2) 논문

Meyendorff, Anna, “The Black Market for Foreign Exchange in the Former Soviet Un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36, Issue 4(1994 Winter).

Mckinnen, Ronald L., “Spontaneous order on the road back from Socialism: An Asian Perspec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Issue 2(1992).

면담 탈북자 인적사항

NO	구분	연령	성별	탈북연도	입국연도	인터뷰날짜	주요경력
1	탈북민 A씨	35	남자	2013년	2013년	2015.11.9.	인민보안부초소장출신
2	탈북민 B씨	54	남자	1997년	1997년	2013.7.18.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출신
3	탈북민 C씨	49	남자	2007년	2007년	2014.2.14.	인민보안부 검찰부 출신
4	탈북민 E씨	41	남자	2010년	2010년	2015.8.5.	담당보안원 출신

A Study of Relations Between Police and Civilians in North Korea in the Transition Period

Kwak, Myeong-Il(Yonhapnews)

This paper is the study of North Korean police, officially called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MP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Kim Jong Il era to that of Kim Jong Un, i.e. from the currency reform of 2009 up to 2015.

The author studied how and in which cases service personnel of the MPS interact with civilians, as well as their complex relations in general. Furthermore, this paper deals with governmental policies aimed to suppress the increasing levels of corruption within the MPS, which seem to be very ineffective and fail to achieve its goal due to passive resistance from both MPS service personnel and civilians. Since the government failed to reform the welfare system for policemen as well, its control over the MPS seems to be weakening, whilst connection between policemen and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growing stronger.

Keywords: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North Korean police,
marketization, system transition